

홍콩의 조세제도

홍콩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으며, 1997년 7월 1일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주권을 회복하고 중국의 홍콩특별행정구(HKSAR,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香港特別行政區政府)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홍콩의 조세제도는 영국 식민통치 시절의 조세제도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현실상황에 맞게 보완 및 개편하여 조세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세제도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제정된 홍콩의 기본법(香港特別區基本法)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홍콩의 조세제도의 주요 특징

- 홍콩은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하고 있다. 즉, 소득세 과세소득은 홍콩에서 발생하였거나 얻은 소득에 한정되며, 홍콩 밖에서 파생되었거나 얻은 소득(역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소득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홍콩원천소득으로 간주하여 홍콩에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기준에 차이가 없으며, 홍콩원천소득에만 과세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세율, 과세방법 및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 홍콩은 원천징수제도가 없다. 다만, 비거주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가 홍콩에서 공연, 운동경기, 광고 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글로벌 금융시장 허브로서 홍콩은 금융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은행예금이나 주식매매 또는 보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자산운용 육성을 위해 2006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고, 역외금융소득에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금융투자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혜택을 활용하여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아시아 지역본부를 홍콩에 두고 있다.
- 아시아 중계무역 허브로서, 홍콩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가 기본적으로 없다. 다만 주류(알코올도수 30%이상), 유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한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 담배, 알코올, 휘발유 등). 홍콩정부는 세원확보를 위하여 5% 부가세(상품 및 서비스 세금) 도입을 검토 한적은 있으나, 관광산업육성 목적으로 무효화 함.

홍콩 세금의 종류

홍콩은 분류과세 시스템(Schedular System)을 가지고 있다 즉

- 급여소득에 대한 급여소득세(Salary Tax)
-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Profit Tax)
-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동산세(Property Tax)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의 종류별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는 개인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홍콩은 이와 반대로 개인의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하여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외, 1866년 도입된 가장 오래된 세금인 인지세(Stamp Duty), 도박세(Betting duty, 경마, 복권 등), 사업자등록세(Business Registration Levy), 공항출국세(Air Passenger Depart Tax), 호텔숙박세(Hotel Accommodation Tax), 자동차 최초 등록세(Motor Vehicle First Registration tax) 등이 있다.

홍콩의 세무조례 (IRO, Inland Revenue Ordinance)

홍콩세법은 영연방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하던 원칙들을 수용하여 1947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97년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이후 제정된 홍콩 기본법(The Basic Law, 基本法) 제정 이후, 홍콩의 모든 법률 체계는 기본법의 장(Chapters,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근거인 세법은 일반적으로 세무조례 (IRO, Inland Revenue Ordinance, 稅務條例)와 시행령(Inland Revenue Rules)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무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 稅務局)은 사례에 따라 세무조례 각 조항에 대한 견해를 설명한 해석 및 관행집(DIPN,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을 발표하고 있다 (2014년 말 까지 세무국이 발행한 DIPN은 59 종류가 있음). 이러한 해석 및 관행집은 법률상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예규 또는 통칙과 마찬가지로 과세상 관례로 정착된 경우 구속력을 가진다.

세무국(IRD) 관련 조례

세무조례 (Inland Revenue Ordinance)	Cap 112
도박세 조례 (Betting Duty Ordinance)	Cap 108
토지세 조례 (Estate Duty Ordinance)	Cap 111
인지세 조례 (Stamp Duty Ordinance)	Cap 117
조세유보 인증 조례 (Tax Reserve Certificates Ordinance)	Cap 289
사업자 등록 조례 (Business Registration Ordinance)	Cap 310
호텔숙박세 조례 (Hotel Accommodation Tax Ordinance)	Cap 348

소득의 원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를 판정할 때 납세의무자의 거주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즉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홍콩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납세의무는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국한된다(속지주의 원칙). 특정소득이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아닌가는 결정하는 원칙은 과세세목 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전세계 소득과세방식(worldwide Tax System)과 원천지역 과세방식(Pure Territorial Tax System)이 있다. 전세계 소득과세방식에 의하면 소득의 원천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불문하고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반면, 원천지역 과세방식은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홍콩은 원천지역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며, 홍콩 이외의 지역에 원천을 둔 소득은 홍콩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는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본토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본토에서 과세된 소득은 홍콩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으로 처리하거나,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과세연도와 과세기간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익년 3월 31일 종료하는 12개월간의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면 2015년 3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는 2014/2015과세연도(The year of assessment 1024/2015)라고 부른다, 과세기간(basis period)은 과세연도 내에 종료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 많은 법인들이 3월 31일을 회계연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과세연도와 과세기간이 일치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필요에 따라 회계기간 종료일을 3월 31일과 다른 날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기간의 선택은 영업을 개시하는 시점에 결정하거나 첫 번째 결산을 마감한 후 회계연도를 변경하여 이루어진다.

소득의 신고

세무공무원(Assessor, 評稅主任)은 합리적인 기한 이내에 특정한 소득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세무신고서는 통상 4월 또는 5월에 발생되며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세무

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납세 고지

세무공무원은 소득세의 부과, 예납소득세의 부과 및 특정상황에서 추계소득세 부과 등 비교적 많은 권한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제출한 신고에 대하여 의의가 없는 경우 소득세와 예납소득세를 고지하며, 적법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을 경우 추계에 의해 고지한다.. 다음의 경우 각각의 소득에 대해 추가세금을 부과한다.

- 지정된 신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
- 납세의무자가 홍콩을 떠난다고 세무공무원이 판단한 경우
- 과세기간 종료 후 6년 이내에 세무공무원이 추가로 특정소득에 대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 한 경우 (고의 또는 사기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공무원은

- 신고서를 수리하고 이에 따라 과세를 하거나
- 신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과세소득이 있다고 세무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세무공무원 과세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할 수 있다,

세무국장은 과세표준, 부과세액, 납부기한을 기술한 고지서를 발행한다.

예납세액(Provisional Tax)

급여소득세 (Salary Tax), 사업소득세(Profit Tax), 부동산세(Property Tax)의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할 예납세액은 전년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되, 급여소득의 경우 순과세소득(net chargeable income), 사업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assessable profit), 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의 순과세가능소득(net assessable value)에 따라 결정된다.

과세절차는 세 가지 세목의 세금 모두 동일하며 다음은 예납세액에만 적용된다.

한 과세연도에 최종세액을 결정할 때, 익년의 과세표준을 추정하고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예납세액을 부과한다. (계속 영업의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실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최종과세표준이 확정하여 고지를 하고, 이 때 기납부 한 예납세액을 차감한다. 최종확정세액 대비 예납세액의 과부족 금액은 다음과세 연도의 예납세액에 가산 또는 상계한다.

납부

납부유예를 제외하고, 세액은 납기이전 또는 세무국장이 지정한 날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time limit)은 세무국장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고지서 상에 지정된다. 보통 11월부터 1월 사이이며, 회계연도가 보통의 납부기한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납세액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고, 직전연도 최종세액 납부기한에 75%를 납부하고 25%는 3개월 후 납부한다.

과세소득금액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이의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세액에 대한 납부유예(hold-over)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예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예상되는 과세표준이 예납과세표준금액(직전연도 과세표준)의 9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이용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이전에 사업중단으로 인해 과세표준 직전연도 과세표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종합과세로 납부세액을 감소할 수 있는 경우
- 예납과세표준이 되는 전년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